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15.(목) 배포즉시 < 12.16.(금)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15.(목)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김준철 (044-203-5865)

제431차 무역위원회,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최종판정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의류 조사개시,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2. 12. 15.(목) 제43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으며,

○ 아울러,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하였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중국 4.90~4.94%, 태국 24.61%, 인도네시아 28.60%)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시장규모는 '21년 약 700억원대(약 2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50%대, 기타국산 10%이내

□ 또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주)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시장규모는 '21년 약 800억원대(약 30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 이내, 기타국산 30% 이내

□ 무역위원회는 지난 '22.2.28.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 아울러,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지속적인 가격하락,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2.2.28.)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Nike Innovate C.V. 신청인)**가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

□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4차 재심) 건과 관련하여, 12.15.(목)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21년 약 9,500억원(약 300천톤)

○ 금번 공청회는 '22.5.9.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미래소재** 및 **수출자**인 **중국플라스틱 가공공업협회**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3.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조사실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담당자	서기관 구교영 (044-203-5868) 사무관 김준철 (044-203-5865) 사무관 김지은 (044-203-5862)
	무역조사실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한정선 (044-203-5872) 사무관 장진호 (044-203-5873) 주무관 이용욱 (044-203-5877)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기호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이정효 (044-203-58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 **(피신청인)** 국내수입업체 A

* 의류, 신발 수출입 및 도매

○ **(상표권)** 제0229091호(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 **(조사대상물품)** 의류(운동복)

신청인 상표권	조사대상물품
	

○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를 해외**에서 수입**

□ 향후 계획

○ **조사개시 결정**('22. 12월) → **무역위 개시 보고**('22. 12월) →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2.12월~)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3. 5월, 잠정)

참고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우리회계법인 / '22.1.7 조사신청

○ 조사대상공급자: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등 4개사

○ 신청인 주장 덤핑률 : 중국 30.0%, 태국 40.4%, 인도네시아 47.6%

○ 조사대상물품 :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 **(정의)**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3920.92.0000

□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 규모('21년) : 약 2만톤이내, 약 700억원대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50%대, 기타국산 10%이내

□ 공급자별 최종 덤핑률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더저우동홍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4.94%	대응
	효성자싱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그 관계사	4.90%	대응
	그 밖의 공급자	4.94%	-
태국	에이제이피 (A. J. Plast Public Co., Ltd.)	24.61%	대응
	그 밖의 공급자	24.61%	-
인도네시아	코롱이나(PT. KOLON INA)	28.60%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28.60%	-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 조사개시('22.2.28) →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22.5.18) → 예비판정('22.7.21) → 잠정관세 부과('22.9.14) → 공청회('22.9.27) → 최종판정('22.12.15)

참고 3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 신청인: 케이씨(주) * (대리인) 삼정KPMG / (조사개시일) '22.2.28.

○ 조사대상공급자: 중국 Chalco, Nanshan, 호주 Alcoa 등 3개사

○ 신청인 주장 덤핑률: 중국 39.97%, 호주 56.93%

○ 조사대상 물품: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 **(정의)** 화학식 $Al(OH)_3$인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이며, 입자크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수산화알루미늄
 - 단, 중국 찰코산동신소재 및 찰코중주신소재가 생산한 HC110A, HC110KK, H-WF-60-SP, H-WF-75, H-WF-75-SP, H-WF-90, H-WF-90-SP, H-WF-100, H-WF-50C-SP 모델로서 YS/T 469-2004(WB) 기준 백색도가 90 이상인 제품을 제외함
- **(용도)**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2818.30.9000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5.5%, 한-중국 FTA 3.5%, 한-호주 FTA 0%

□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 규모('21년): 약 30만톤, 800억원대

* 시장점유율(물량) :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 이내, 기타국산 30% 이내

□ 공급자별 최종 덤핑률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찰코산동(Chalco Shan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13.99%	대응
	룽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 및 그 관계사	22.39%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13.99%	-
호주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37.96%	대응
	그 밖의 공급자	37.96%	-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 조사개시('22.2.28) → 질의서 송부 →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22.4.29) → 예비판정('22.7.21) → 공청회('22.9.27) → 최종판정('22.12.15)

참고 4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조사(4차재심) 개요

□ 조사 개요

○ 요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미래소재㈜

*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우리회계법인 / 요청 접수(기재부): '22.3.9.

○ 피요청인: (중국) 푸웨이, 천진완화 등 8개사 (인도) 진달 등 2개사

○ 요청인 주장 덤핑률: (중국) 36.98%, (인도) 34.90%

○ 재심사 요청물품: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정의)**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TPA)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Dimethyl Terephthalate, DMT)과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EG) 간 축중합 등으로 얻어진 PET 칩을 면상으로 압출한 후 종횡연신을 통해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필름
- **(용도)** 산업용(열차단 필름, 접착테이프 등), 포장용(스낵,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프린터 인쇄용지 등)
-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3920.62.0000, 3920.69.0000

□ 국내시장 현황

○ 국내시장 규모('21년): 약 9,500억원(약 300천톤)

* 시장점유율: (국내생산자) 약 60%대, (중국산) 10%이내, (인도산) 0%, (기타국산) 약 20%대

□ 반덤핑관세 부과현황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Fuwei Films Shandong Co., Ltd.('푸웨이')	36.98
	Tianjin Wanhua Co., Ltd.('천진완화')	13.51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산토우')	36.98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이화도레이')	36.98
	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장수중다')	36.98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저장우밍')	36.98
	TSF Co., Ltd.('티에스에프')	36.98
	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상하이')	36.98
	그 밖의 공급자	23.61
인도	Jindal Poly Films Limited('진달')	34.90
	Garware Polyester Limited('가웨어')	34.90
	그 밖의 공급자	34.90

□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 재심사 요청접수('22.3.9.) → 재심사개시 결정('22.5.9. 기재부) → 이해관계인회의('22.9.7.) → 공청회('22.12.15.) → 최종판정('23.2월 예정)

참고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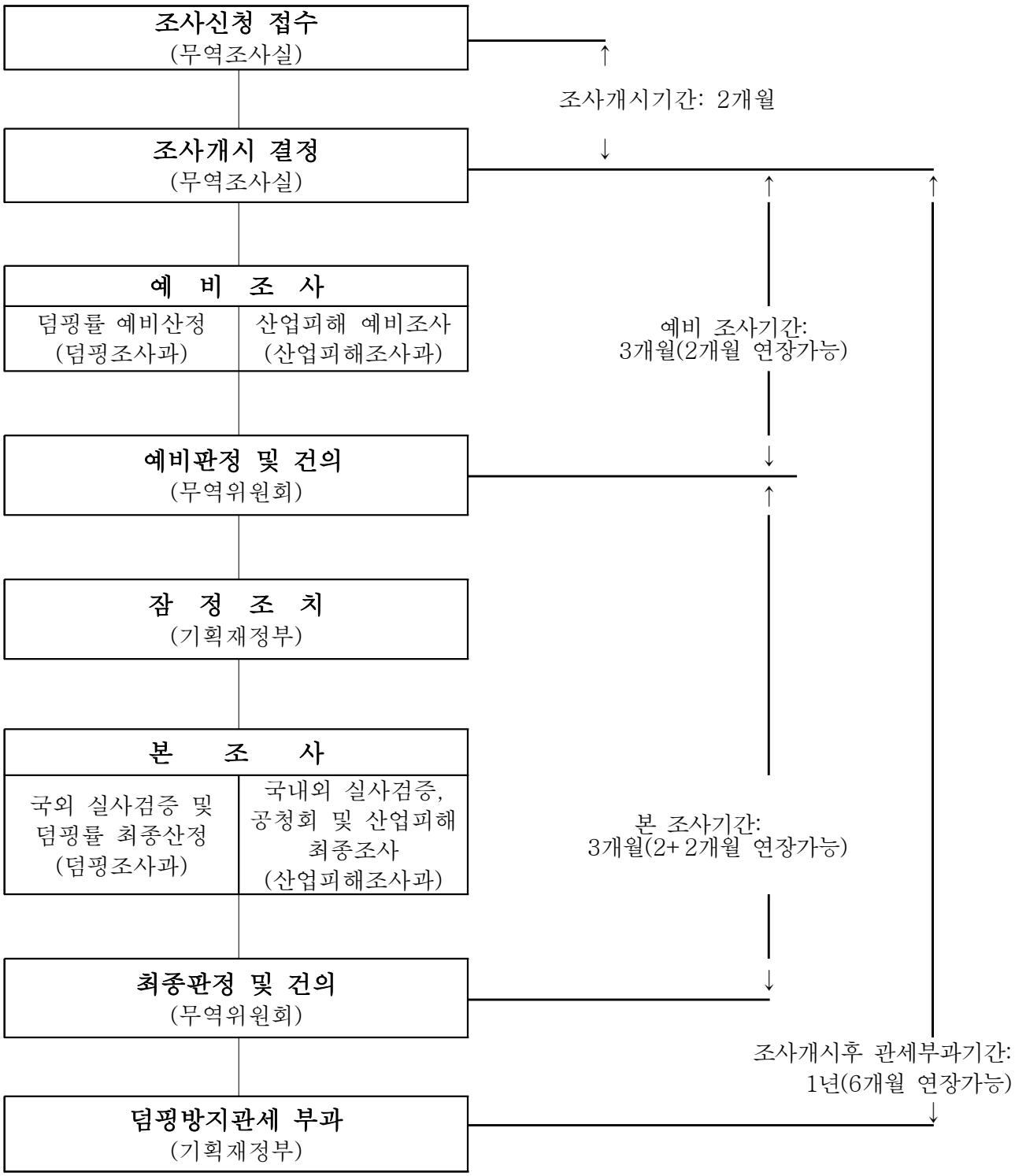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참고 6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참고 7 반덤핑조사(종료재심) 절차도

